#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**2505** 

제출연월일 : 2022. 9. .

제 출 자:하남시장

### 1. 개정이유

가.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는 비율 구간 명확화를 통해 여유자금 적립 증대 기반 마련

나. 각종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등 재원 확보

### 2. 주요내용

-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는 비율 구간 명확화(안 제4조)
  - '1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'을 '10% 이상 20%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금액'으로 의무 적립 비율 확대를 구체적 명시
-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- 4. 신 · 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- 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- 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- 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2. 08. 01. ~ 2022. 08. 21. [20일간]

나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## 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### 9. 참고사항

가.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나.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### 10. 관련부서 : 경기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

#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제목 "(통합기금의 계정구분)"을 "(통합기금의 계정 구분)"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"총 결산"을 "총결산"으로, "이상에 해당하는"을 "이상 20%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이상에 해당하는"을 "이상 20%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해당하는 경우에는"을 "해당할 때는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평균금액"을 "평균 금액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기금사용"을 "기금사용"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하며, 같은 항 전기를 "80%"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"사용하는 경우에는"을 "사용할 때는"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"업무담당"을 각각 "업무 담당"으로 하고,

제5조제2항 중 "처리 할"을 "처리할"로 한다.

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"관리하기 위하여"를 "관리하는 데"로, "증빙서류"를 "증명서류"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"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"을 "처리할 때는 그 전산입력"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"심의의 공정을 기하기"를 "심의를 공정하게 하기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해당함에도 불구하고"를 "해당하지만,"으로, "해촉될"을 "해촉될"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"(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의무)"를 "(통합기금으로의 예탁 의무)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"법정의무기금"을 "법정의무기금"으로, "인정하는 경우에는"을 "인정할 때는"으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"(예탁기간 및 이자율)"을 "(예탁 기간 및 이자율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예탁기간"을 "예탁 기간"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"기금운용상"을 "기금 운용상"으로, "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"를 "예탁 기간의 만료 전이라도"로, "상환 받"을 "상환받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"를 "상환받으려는 때에는 상환받으려"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"(존속기한)"을 "(존속 기한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존속기한"을 "존속 기한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정책기획관
입	부서장 직위 · 성명	정책기획관 박 춘 오
안	팀장 직위 · 성명	예산팀장 최 경 미
자	담당자 성명 · 전화번호	한 송 희 (790-5680)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 <u>(통합기금의 계정구분)</u> (생략)	제2조 <u>(통합기금의 계정 구분)</u> (현 행과 같음)
제4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	제4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
용도) ① 하남시장(이하 "시	용도) ①
장" 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에	
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	
정에 적립하여야 한다. 다만, 특	
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	
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	
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	<b></b> .
있다.	
1.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의 일	1
반회계 지방세, 경상적 세외수	
입, 일반조정교부금의 <u>총 결산</u>	<u>총결산</u>
세입액의 합이 전년 대비 10%	
이상 증가한 경우, 그 초과분	이상 20% 이
의 10% <u>이상에 해당하는</u> 금액	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적합하
	<u>다고 인정하는</u>
2.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	2
세계잉여금의 10% <u>이상에 해</u>	이상 20%
당하는 금액	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적합
	<u> 하다고 인정하는</u>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-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.
- 1. 하남시의 세입 중 지방세, 세 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 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<u>평</u> 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
- 2. (생략)
- 3. 지하철 운영, 대규모 사업 추진 등 <u>기금사용</u>의 필요성이인정되는 경우
- 4. · 5. (생략)
- ④ 제3항에 따라 1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계정의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 이하로 한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(생 저략)
  - ② 통합기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로 <u>처리 할</u> 수 있다.

<u>해당할 때는</u>
1
평균 금액
2. (현행과 같음)
3
<u>기금 사용</u>
4. · 5. (현행과 같음)
4
<u> 80%</u>
사용할 때는
세5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(현
행과 같음)
②
처리할
<u> </u>

(3) -----

- 제6조(회계공무원) ① 통합기금의 기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  - 1. 기금운용관: 통합기금 <u>업무담</u> 당 담당관 또는 과장
  - 2. 기금출납원: 통합기금 <u>업무담</u>당 팀장
  -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<u>관리하기</u>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, 통합기금에 관한 <u>증빙서류</u>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대장의 내용을 전산입력 <u>처리하</u>는 경우에는 그 전산 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.
- 제8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저 등) ① 위원은 <u>심의의 공정을</u>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  - ② (생략)
  - ③ 위원이 제1항에 <u>해당함에도</u>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<u>해</u> 촉 될 수 있다.

세6조(회계공무원) ①
·
1 <u>업무 담당</u>
 2 <u>업무 담당</u>
2
<u>관리하는 데</u>
증명서류
처리할 때는 그 전산입력 -
제8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
등) ① 심의를 공정하게
<u>하기</u>
② (현행과 같음)
③ <u>해당하지만,</u>
해촉될
<u>기기 본</u> 

- 제9조(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의무) 개별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법정의무기금</u> 또는 시장이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<u>인정하는 경우에</u>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제10조(예탁기간 및 이자율) ①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<u>예탁</u>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.
  - ② · ③ (생 략)
- 제11조(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)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<u>기금운용상</u> 불가 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<u>예</u> 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에 미리 그취지를 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한다.
- 제12조(존속기한) 기금의 <u>존속기</u> 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9조 <u>(통합기금으로의</u> 예탁 의무) 
 법정 의무기금인
<u>정할 때는</u>
 제10조 <u>(예탁 기간 및 이자율)</u> ① -
<u>예탁</u> <u>기간</u>
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11조(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) ①
기금 운용상
예탁 기간의
<u>만료 전이라도 상환</u> <u>받</u> .
② <u>상</u> 환받으려는 때에는 상환받으려
•
제12조 <u>(존속 기한)</u> <u>존속 기한</u>

### 관계법령 발췌서

【지방기금법】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"통합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#### ② ~ ③ (생 략)

-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
-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다른 회계로의 전출
  - 2. 지방채 원리금 상환
-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⑦ <u>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</u>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### 타 시 조례

# 1 「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[시행 2021. 1. 1.] [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664호, 2020. 11. 13., 전부개정]

제6조(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)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하되, 전년도 결산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.

- 1. 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
- 2.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액이 전년도의 결산서 상 일반회계 규모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
- ② (생략)

### ▶ 「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[시행 2022. 5. 16.] [경기도성남시조례 제3775호, 2022. 5. 16., 일부개정]

#### 제16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(생략)

-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- 1. 「지방자치법」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지방세, 경상 적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의 결산서상 세입액의 합이 전년도의 1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, <u>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</u>
  - 2.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의 120퍼센트 를 초과한 경우, <u>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</u>
  - 3. 그 밖에 시장이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~ ④ (생 략)